

기 술 용 역 계 약 서

계 약 자	발 주 기 관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
	계약상대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명성엔지니어링 • 법인등록 번호:131211-0040887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9번길 18 (동아프라자 301호) • 전 화 번 호 : 031) 886-7422 • 대 표 자 : 김 선 무
계 약 내 용	계 약 건 명	상주영천고속도로 시설물 안전·하자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계 약 금 액	일금사억구천이백팔십만원정(₩492,800,000) • 공 급 가 액 : 일금사억사천팔백만원정(₩448,000,000) -정기점검3회 : 일금이억일천만원정(₩210,000,000) -정밀점검1회 : 일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성능평가1회 : 일금팔천팔백만원정(₩88,000,000) • 부가가치세 : 일금사천사백팔십만원정(₩44,800,000) ※하자점검4회(점검시 병행 실시) 용역대가 포함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 ~ 2021. 12. 31.
	계약보증금	계약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 증권으로 제출)
	지체상금율	매 지체일수마다 0.25%(용역계약 제15조)
	기 타 사 항	• 용역범위 : 정기점검 3회, 정밀점검 1회, 성능평가 1회, 하자점검 4회(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2항) • 성과품 제출 후 익월 말에 지급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0. 05. 12 . 불임서류 : 1.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발주기관) 경북 영천시 화산면 신정길 60-40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경 준 (인) (계약상대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9번길 18 (주)명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 선 무 (인)		

용역계약일반조건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상주영천고속도로 시설물 안전·하자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의 실시자인 (주)명성엔지니어링(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정기·하자·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역 내용 및 범위) 용역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준용한다.

- ① 용역 내용 : 상주영천고속도로 시설물 안전·하자점검 및 성능평가
- ② 용역의 범위 : 정기점검3회, 정밀점검1회, 성능평가1회, 하자점검4회 (점검시 병행실시)

1. 점검횟수

구 분		정기점검	정밀점검	성능평가	하자점검	비고
2020년	상반기	○	-	-	○	
	하반기	○	-	○	○	
2021년	상반기	○	-	-	○	
	하반기	-	○	-	○	

2. 점검대상 시설물

구 분	합계	교량		터널	옹벽	절토사면	비고
		1·2종	기타종				
정기/정밀	135개	42개	-	12개	15개	66개	정기·정밀점검시 하자점검 포함
하자점검	137개	42개	68개	12개	15개	-	
성능평가	81개	-	-	-	15개	66개	하자만료시 시행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한다. 단,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그 사무 위임받아 관장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명성엔지니어링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발주기관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기관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 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발주기관은 해당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과업지시서 준용)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종사하는 계약당사자의 고용인에 대해 안전사고와 재해예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인명, 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보상 책임을 진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제19조(기성부분의 인수)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불가항력)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7조(검사)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17조(검사)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7조(검사)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5조(지체상금) 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 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 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5조(지체상금)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제1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발주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인수) ① 발주기관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7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기관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0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0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2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3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6개월 단위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검사완료일부터 익월 말일까지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4조(대가의 지급) 제4항을 준용한다.

제24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익월 말일까지(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5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9.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도급 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해지 등 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1항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분야에 대해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하도급계약·변경·해지 시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5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1조(불가항력)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7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3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8조(용역의 일시정지)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26조 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28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지시한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3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기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제3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33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2018.3.20. 시행, 일부개정)을 참고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관할법원의 지정)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 소재지에 위치한 관할법원으로 한다.